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9.4.10일 행정구역관할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예전시체험관 주소를 정정하고,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시·도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에 고건축(한옥)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였으며, 조례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주소 정정 (안 제2조)
- 나. 공예관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시·도 시·장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 (안 제3조제1항)
- 다. 공예관 설치·운영에 고건축(한옥)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 (안 제3조 제2항)
- 라. 조례 중 불분명한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 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1. 9. 22. ~ 10. 13. (21일간), 제출 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송정리”를 “상진부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군 내에서 생산되는”을 “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 시·도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고건축(한옥)교육 및 체험시설

제5조제1항 중 “군수”를 “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의거”를 “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사항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「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사항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</u></p> <p>제2조(위치)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(이하 “공예관”이라 한다)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진부면 <u>송정리 1306-3번지</u> 일원에 둔다.</p> <p>제3조(시설) ① 공예관은 <u>군</u> 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(실용적이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을 말하며 민속공예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,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② 공예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<u>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 <u>상진부리</u> ----- ----.</p> <p>제3조(시설) ① ----- <u>군내</u>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 시·도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고건축(한옥)교육 및 체험시설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위탁운영) ① <u>군수는 효율적인 공예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「<u>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</u>」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위탁운영) ① <u>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「<u>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에 따라 -----.</p>
<p>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<u>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예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</u></p>	<p>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----- <u>제5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협약체결) <u>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</u></p>	<p>제7조(협약체결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문화예술 또는 공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공예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기타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14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15조(임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<u>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」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</p>	<p>제15조(임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<u>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</u>」 및 「<u>평창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</u>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(준용) ----- ----- 사항은 「<u>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</u>」 및 「<u>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 ----- -----.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- 공예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용료에 대한 수입 발생
-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대수선비 및 운영비, 시설유지관리비의 도로점용료, 운영위원회 운영시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한 비용 발생

나. 관련조문

- 제5조(위탁운영)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- 제8조(사용료) ① 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법 등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의한다.
 - 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 - ③ 공예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,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- 제15조(임기 등)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세입발생에 따른 사용료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별도로 재산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

- 세출발생금액은 매년 고지되는 도로점용료와 위원수당 및 여비는 조례에 정해진 비용으로 산정하였으며 공예관운영 시 발생하는 대수선비등은 2년에 1번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

나. 추계 결과

-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연 3,000,000원으로 4년간 12,000,000원 세입 발생
 - 공예관 과세표준액(재무과) $300,000,000\text{원} \times 10 \div 1000 = 3,000,000\text{원}$
 - 재산평정가액으로 산정한 3,000,000원은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최대금액임
 - 현재 공예전시체험관협약시 판매점에 대한 수익의 1000분의 10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판매점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징수 가능
- 도로점용료는 1년에 1,400,000원씩 5년간 7,000,000원의 비용 발생
 - 2010년 도로점용료 1,469,380원, 2011년 도로점용료 1,392,710원
 - 도로법 시행령 제42조
면적 × 인접지번 토지가격(공시지가) × 법정요율(0.02) × 감액율(전년도 단위면적당 점용료 대비10%이상시 감액)
-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는 6명으로 산정하여 1년에 720,000원씩 4년간 2,880,000원의 비용 발생
- 위탁시설운영에 따른 대수선비는 1회에 5,000,000원씩 2회로 10,000,000원의 비용 발생, 운영상황에 따라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로점용료, 위원수당, 대수선비 등 비용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조달

3. 작성자

작성자	관광경제과 투자유치 김은규
연락처	(033) 330 - 2741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1년)	2차년도 2012년)	3차년도 (2013년)	4차년도 (2014년)	5차년도 (2015년)	계
세 입		-	3,000	3,000	3,000	3,000	12,000
○ 수익시설 사용료			3,000	3,000	3,000	3,000	12,000
세 출		1,400	7,120	2,120	7,120	2,120	19,880
○ 도로점용료	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
○ 위원회운영위원수당			720	720	720	720	2,880
○ 대수선비 등 관리 운영비			5,000		5,000		10,000
재원 조달		1,400	7,120	2,120	7,120	2,120	19,88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400	7,120	2,120	7,120	2,120	19,880
	지방세	1,400	7,120	2,120	7,120	2,120	19,88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44조 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】

- 제27조 (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(생략)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】

- 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1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

2.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
③(생략)

제20조 (수탁재산의 관리)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 (관리상황의 보고 등)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·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【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】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"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